

제337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 
제1차 교육위원회  
2023. 2. 1.(수)

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 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

교육위원회  
(수석전문위원 장중찬)

#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: 윤종호 의원 외 10명

### 2. 개정이유

-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수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 규정에 연임이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변경함(안 제4조제1항)
- 나. 개정규정에 대하여 적용례를 신설함(부칙 제2조)

### 4. 검토의견

가. 개정취지

- 경상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의 임기를 1~2년 중에서 규정으로 정하되, 연임은 1회만 허용하고 있음. 하지

만, 일부 학교에서는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일부 위원이 초과연임을 하고 있는 문제점이 발생함.

- 학교운영위원회는 공립학교에는 심의기구의 성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, 사립학교에는 자문기구의 성격과 권한을 부여하므로 학교 운영에 있어 그 기능은 매우 중요하고 공정성이 담보되어야 할 책무성이 있음.
- 다만, 초과연임을 허용한 일부 학교의 실정이 시외지역 소규모 학교이기 때문에 신규 운영위원의 모집 및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부득이한 상황이 인정됨.
- 따라서, 본 조례안은 위와 같은 배경의 필요성을 토대로 학생 수 100명 미만(유아 수 20명 미만 유치원) 학교에 한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허용하는 예외 단서조항을 규정함으로써 소규모 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역할,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해 학교운영의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개정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안 제4조제1항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규정에 대하여 단서조항을 변경하여 학생 수 100명 미만(유아 수 20명 미만 유치원)의 소규모 학교에 한하여 결원 위원 수보다 입후보자가 적은 경우 2회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함.
- 부칙 제2조는 경과조치로서 제8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대하여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 학교운영위원을 연임하고 있는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적용례를 신설함.

## 다. 종합의견

- 학생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학교에서는 학부모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있어 신규 위원  
의 선출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, 연임 규정을 위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대안 마련의 필요성이 인정됨.
- 본 조례안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에 한해서만 위원의 연임을 2회 허용하는 것으로써 상위법령 위반 소지 및 차별적 요소가 없다고 판단됨.
- 살피건대, 본 조례안은 소규모 학교 운영위원회의 공정성을 정당하게 부여하고 본연의 순기능의 회복을 통해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것으로 개정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임

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